

2018년
10호

2018년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
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

작 성 자	사무국장 송인욱
작성년월일	2018. 12. 14.

2018년도 제10차 정기이사회 의사록

2018년 12월 14일(금) 개최된 2018년 제10차 정기이사회 결과보고입니다.

1. 회의개요

- 일시장소: 2018. 12. 14(금) 19:00~22:00, 협동조합 회의실
- 참석이사: 정원 15명의 이사 중 14명 참석
 - 민동세(이사장), 강신용, 권은자, 박정숙, 박정애, 박진환, 송윤주, 이병화, 이성례, 천진아, 김승호, 김은미, 윤여운, 정지현
 - 불참이사: 조남식
- 참관자 : 송인옥 사무국장, 최석환 사업팀장
 - ※ 안승대이사가 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당선되어 이사회를 사임(2019.11.19. 등기완료)

2. 안건상정 및 토의결과, 의결내용

- 보고안건 제1호: 2018년 제8회 정기이사회 전차 의사록과 제9차 임시이사회 전차 의사록의 내용을 송인옥사무국장이 보고하다.
 - 전차 의사록을 이메일로 사전 검토한 내용으로 반대 없이 회의록을 채택하다.
- 보고안건 제2호: 주요 활동보고를 단위별로 보고하다.
- 보고안건 제3호: 소액대출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하다.
- 의결안건 제1호: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2018년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’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설명하고,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다.
 - 주요 의결 사항

(1) 이사회회의 만장일치로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2018년 추경예산안’이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되다.

-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은 금5,011,658,149원으로 함.

(2) 이사회회의 만장일치로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2019년 본예산안’이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되다.

- 2019년도 본예산은 금5,247,136,400원으로 함.

□ 의결안건 제2호: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 2018년 추경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’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을 설명하고,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다.

○ 주요 의결 사항

(1) 이사회회의 만장일치로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 2018년 추경예산안’이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되다.

-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은 금382,768,330원으로 함.

(2) 이사회회의 만장일치로 ‘시립중량노인전문요양원 병설 데이케어센터 2019년 본예산안’이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되다.

- 2019년도 본예산은 금413,879,390원으로 함.

□ 논의안건 제1호: 제안된 선거규정 초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여 초안을 정리해줄 것을 주문하다.

○ 주요 논의 결정 사항.

(1) 차기이사회 때 선거규정 최종안을 보고하고, 선거규정 제정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.

□ 논의안건 제2호: 우리조합은 직원조합원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, 장기 과제로 논의되어져 온 ‘전직원의 조합원’제도에 대하여 토의 후 추진 방안을 정리해 줄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다.

○ 주요 논의 결정 사항.

(1) 이사회는 우리조합의 지점소속 직원의 ‘전직원 조합원화’에 대하여 제도화하기로 결정하다.

- 신규 채용의 경우, 채용전에 조합원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기로 한다.
- 기존 직원의 경우, 조합원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, 조합원 가입 유도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.
- 수탁사업장은 ‘전직원 조합원화’ 제도에서 제외되지만, 조합원가입 유도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.

(2) 우리조합의 지점소속 직원의 ‘전직원 조합원화’를 위하여, 해당내용을 넣어 정관 개정하기로 하다.

- 각 지점의 취업규칙 개정 필요시, 개정 준비를 한다.

□ 논의안건 제3호: 2019년도 대의원총회 개최 준비 내용을 논의 하여,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의결 또는 논의 결정하여 줄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다.

○ 주요 의결 및 논의 결정 사항.

(1) 대의원총회 일시, 장소 및 기타를 결정하다.

- 일시: 2019년 2월 22일(금) 오후 7시
- 장소: 공유공간 나눔 지하교육장
- 기타: 음식 및 기타 실무적인 검토은 사무국에 위임

(2) 2019년 임원선거의 정수는 임기도래 이사가 속해 있는 단위의 후임 임원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다.

- 늘푸른돌봄센터 소속 이사 4명, 중랑요양원 소속 이사 3명, 서울아가마지 소속

이사 1명, 후원자조합원 지위 이사 3명, 후원자조합원 지위 감사 1명(총12명)

(3) 2019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 3건을 상정하기로 하다.

- 제안된 안에 대하여 문구 수정 필요시, 이사장이 정리하기로 함
 - o 정관 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제②항 2호 개정 요청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 및 경영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</p> <p>2.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</p> <p>3. 생략</p>	<p>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 및 경영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</p> <p>2. 직원조합원: 조합의 수탁사업장을 제외한 지점사업장에 고용된 자</p> <p>3. 생략</p>

- o 제55조(소액대출) 제①항 ~ 제⑤항의 내용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액대출사업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, 개정 필요, 승인 요청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55조(소액대출)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4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,000,000원으로 한다.1)</p> <p>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20% 로 한다.2)</p> <p>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3% 로 한다.3)</p> <p>⑥ 생략</p>	<p>제55조(소액대출)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4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을 증자하기 위해 매월 납부를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본인 총 출자금의 4배 이내에서 선택하되, 최대 400만원 까지 가능하다</p> <p>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연20% 로 한다.</p> <p>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3% 로 한다.</p> <p>⑥ 생략</p>

o 제54조(사업의 종류) 개정 승인 요청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54조(사업의 종류)</p> <p>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.</p> <p>생략</p> <p>13. 교육 및 교육 컨설팅</p> <p>(2018.2.23, 정기대의원총회 3차 개정, 7호 수정, 11~13호 신설)</p>	<p>제54조(사업의 종류)</p> <p>생략</p> <p>13. 교육 및 교육 컨설팅</p> <p>14. 주거기본법에 의한 임대주택공급, 공동주택 관리, 주거환경의 정비 등 주택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관리서비스</p> <p>15.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</p> <p>16.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서비스분야에 필요한 기관 및 시설 운영</p> <p>(2019.2.22, 정기대의원총회 4차 개정, 14~16호 신설)</p>

1) 협동조합 업무지침;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.
2) 협동조합 업무지침;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(5%) 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.
3) 협동조합 업무지침;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.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. 다만,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「이자제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(연 30%)을 초과할 수 없다.

(4) ‘자금조달에 대하여 이사회 위임 승인건’ 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고,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
(5)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승인하다.

- 2018년도 활동평가 및 결산재무제표 보고
- 2018년도 감사보고서 승인(장이환, 정영원 감사)
- 임원선출(이사장, 이사, 감사)
- 정관개정
- 2019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손익계산서(안) 승인
- 지점사업장의 전직원조합원화 승인
- 자본조달에 대한 결정 이사회로 위임
- 기타 부의할 안건에 대한 논의

□ 논의안건 제4호; 우리조합은 ‘활동목적2. 좋은돌봄실천과 이용자옹호’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,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‘서비스 질향상 활동’을 추진코자 하며, 이에 대하여 토의 후 추진 방안을 정리해 줄 것을 이사회에 주문하다.

○ 주요 논의 결정 사항.

(1) 질향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다.

- 2016년에 설치된 질향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함
- 2019년에는 서비스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넣어, 사무국차원에서 지원하며 추진하기로 함

(2) 질향상위원회 TF를 구성하기로 하다.

- TF에서는 이사회에서 언급되었던 서비스 질향상 활동 명칭, 위원회 명칭, 사업

계획서에 반영 등은 물론, 기타 총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함

- 차기 이사회는 2019년 1월 23일(수) 저녁7시에 개최하기로 하고,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:22:00분

2018년 12월 14일

기록: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무국장 송인옥

<첨부> 이사회 참석한 이사의 서명을 첨부함.